

의안번호	제564호
의결 연월일	2013년 12월 10일 (제325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3년 11월 4일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4
----------	-----

제출연월일 : 2013. 11.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2013년 12월 12일자로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으로의 통합 등 지방공무원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5조제5호, 제6호 및 제7호)

1)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되는 6급상당 이하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인사 관련 위임 근거를 조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직종이 폐지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인사 관련 위임 사항을 삭제함

나.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직종이 폐지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인사 관련 위임 사항을 삭제함(안 제6조제1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0. 18. ~ 2013. 10. 28.):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를 “일반직 6급(전문경력관의 경우 나군) 이하 지방공무원”로, “임지지정”을 “임지지정·보직부여”로, “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을 “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을 “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로 한다.

제5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중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를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를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1. ~ 4. (생략)</p> <p>5.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u>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직·대우공무원선발·<b>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b></u></p> <p>6.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6월 이상)·복직(6월 이상 휴직)·직위해제·파견·퇴직·대우공무원선발·의원면직·<u><b>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b></u></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u>일반직 6급(전문경력관의 경우 나</u> <u>군) 이하 지방공무원 -----</u> <u>-----임지지정·보직부여-----</u> ----- <u>-----<b>시보임용</b></u> <u>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u> <u>임용·경징계</u></p> <p>6. ----- ----- ----- ----- <u>-----<b>시보임용기간만료로</b></u> <u>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u></p>

현행	개정안
<p><u>7. 지역교육청·소속기관·공립 관할 학교 기능직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직·대우공무원 선발·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 단,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제외</u></p> <p>8. ~ 30. (생략)</p> <p>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p> <p>1. <u>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u>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p> <p>2. ~ 8. (생략)</p> <p>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p> <p>1. <u>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u>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p>	<p><u>&lt;삭제&gt;</u></p> <p>8. ~ 30. (현행과 같음)</p> <p>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p> <p>1. <u>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u> ----- ----- -----</p> <p>2. ~ 8. (현행과 같음)</p> <p>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p> <p>1. <u>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u>----- ----- -----</p>

현행	개정안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 관계 법령

### □ 지방공무원법[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1호, 2012.12.11.]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③ 삭제 <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교육부, 2013. 9.)

3. 전환 개요

구분	업무성격	전환개요
기능직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 관리운영직군 임용 → 전직시험 거쳐 유사직렬로 전직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는 경우	⇒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
별정직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 해당직렬로 임용, 전담직위 지정 → 전담직위평가 후 해제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며 특정 전문분야 담당, 순환전보 곤란	⇒ 전문경력관 지정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며 상당인원 재직, 계급제적 성격	⇒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
	임기가 있는 직위	⇒ 임기제 일반직
계약직	비서관·비서, 정무특보, 국제관계대사 등 정무직 보조·보좌인력	⇒ 별정직
	그 외 계약직	⇒ 임기제 일반직